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의안 전체에 적용 확대〉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04호)

2025.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승래 · 박선원 · 복기왕 · 민형배 · 이해민 · 김 윤
황정아 · 박용갑 · 이정문 · 강선우 · 한준호 · 장철민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5. 4. 29.

3. 회 부 일 : 2025. 4. 30.

※ 의안번호 : 1020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안은 법률안, 결의안 및 건의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법률안은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하면서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 할 때는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대표발의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안이 아닌 결의안·건의안 등도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발의제도가 법률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협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을 포함한 의안에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 의안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이 아닌 결의안·건의안 등 전체 의안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 ② (생략) ③ 의원이 <u>법률안</u> 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u>법률안</u>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④ · ⑤ (생략)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의안</u> ----- ----- <u>의안</u> ----- -----. ④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에 따르면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제79조제1항),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제79조제2항).

-
- 1)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할 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포함할 수 있다)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다.
 ⑤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현행법은 법률안에 대하여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고(제79조제3항),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공동발의 의안의 경우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하는데(제79조제4항), 이는 의원의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5대 국회법 개정(2000.2.16.) 시 도입된 것임.

또한, 현행법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도 포함)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의원(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도 포함)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두고 있음(제79조제4항). 이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의원입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21대국회법 개정(2023.7.11.) 시 도입되었으며²⁾, 2025년 6월 말 현재 기준 제22대국회 공동대표발의 법률안은 총 92건임.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법률안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는 대표발의제도 및 공동대표발의제도 등을 결의안·건의안 등 전체의안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의안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초당적인 협력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 부칙 제1조³⁾는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 의안에 대한 발의의원-찬성의원 구분, 공동대표

2) “현행법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률안을 마련하더라도 대표발의의원은 1명만 명시할 수 있어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비교섭단체 의원 포함 가능)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는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21227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대안의 제안이유” 중)

3)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의원 성명 표기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e-의안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수정·보완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적정 시행일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4